



**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급경사지법 시행규칙 )**

[시행 2024. 7. 31.] [행정안전부령 제502호, 2024. 7. 31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재난경감과) 044-205-5157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 등)** ①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9., 2017. 7. 3.>

1. 붕괴위험지역의 위치 및 현황
2.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사유
3.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
4.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

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<개정 2024. 7. 31.>

1. 붕괴위험지역의 위치
2.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
3.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
4.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
5. 붕괴위험지역 지정 또는 변경 일자
6.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(축척 5,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말한다)

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“관계인”이라 한다)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
2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3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

**제3조(관계인의 동의)**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.

1.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
  - 가.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토지의 위치
  - 나.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유
  - 다.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려는 기간
2.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나무·흙·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(이하 “장애물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
  - 가.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장애물의 위치 및 내용
  - 나.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사유
  - 다.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일시

**제4조(토지출입 등의 증표)**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·건축물·공작물,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·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5조(위험표지)**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,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7. 3. 9., 2017. 7. 3.>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응급조치확인서)**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
**제8조(계측업 등록 등)**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(業)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7. 3. 9.>

1.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
2. 보유한 기술인력 명단 및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(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며, 이하 "건설기술경력증"이라 한다)
3.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
4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이수 증명 서류 사본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)
2.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

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(이하 "계측업자"라 한다)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
2.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(실무경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
3.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계측장비 명세서 및 계측장비 성능검사서 사본

④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
1.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)

- 2.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
- 3.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
- ⑤ 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·휴업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
**제9조(계측업 등록증)**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.

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경위서(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계측업자의 승계 신고)** ① 법 제24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계측업 양도·양수신고, 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
**제11조(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**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

**제12조(계측기기의 성능검사)**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.

1. 형식, 제조번호 이상유무 등 외관검사
2. 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
3. 삭제 <2017. 3. 9.>

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3회 이상 성능검사를 한다.
2. 현장별로 환경조건에 따른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관련 시방서에 따로 기준을 마련한 후 성능검사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13조(검사필증)**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된 자(이하 "성능검사대행자"라 한다)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14조(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)**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9. 8.>

1.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 명세서
2. 보유 검사기술인력과 그 건설기술경력증(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 또는 이에 준하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

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)
2.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
-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9. 8.>
  1.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대표자나 임원의 명단
  2.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기술인력 명단 및 건설기술경력증
  3.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시설이나 장비 명세서
- ④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9.>
  1.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)
  2.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
  3. 보유한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-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9. 8.>

**제15조(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**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시·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9. 8.>

**제16조(실무교육훈련과정 등)**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,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,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17조(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)**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(이하 "방재전문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강의실 100㎡ 이상(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)
2. 전임강사 1명 이상. 다만, 연간교육인원이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1만 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한다.
3. 전담직원 1명 이상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**제18조 삭제** <2024. 7. 31.>

**부칙** <제502호,2024. 7. 3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특례)**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·고시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.